

分配의 正義

李 正 典

본 논문은 분배의 정의에 대한主流經濟學과 맑스經濟學의 견해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논문이다. 물론 가치중립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은 원래 分配의 定義와 같은 가치판단의 문제를 경제학이 다룬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와 같은 도덕적 문제도 합리적 선택 및 과학적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定義의 概念에 대한 것으로서 주로 분배적 정의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두번째 부분은主流經濟學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견해 내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견해들을 정리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정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寄與의 原則, 공적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인다.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를 꺼려하기는 맑스경제학도 주류경제학과 바찬가지이다. 물론 꺼려하는 이유는 상당히 다르다. 맑스경제학은 정의에 대한 논의가 자칫 문제의 핵심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즉, 맑스주의가 지향하는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인 양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맑스는 資本主義社會아 말로 정의가 필요한 사회요 또한 정의의 구현을 끊임없이, 그러나 헛되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맑스가 추구하는 것은 정의 그 자체가 필요없는 사회의 건설이다. 그러나 굳이 맑스경제학이 시사하는 分配的 定義의 원칙을 끊는다면, 그것은 필요의 원칙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必要의 原則은 비현실적인 원칙이요 동상적인 원칙이라고 하여 백안시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1. 正義의 概念과 正義의 基準

分配正義의 問題는 가치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하여 통상 경제학에서는 논외로 치던 문제이다. 그러나 분배의 문제가 社會問題化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비록 價值判斷에 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분배정의의 문제를 經濟學 내부로 끌어들여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을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분배의 정의의 개념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主流經濟學과 맑스經濟學의 分配觀 내지는 分配的 正義觀을 정리하는 것이다.

正義의 영어 단어인 justice의 *jus*는 라틴어로 ‘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正義란 원래 법률용어이다. 옛 날 워시사회나 고대사회에 있어서의 정의는 인간에게 자연적

으로 주어지는 항구분·면의 법과 동일시되었고 이 法의 내용이 곧 正義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근대 자유민주주의 시내에 들어와서부터 법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념에 맞추어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은 사회의 이념에 비추어 法 그 자체를 평가하는 包括的인 概念으로 승격되었고 사회의 이념에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이념이라는 것이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正義의 概念 역시 한 가지 의미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 되어버렸다.

사람에 따라 정의의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정의의 개념이 뿌리깊게 전해내리 온다[Gerwith(1985, p. 9)]. 그 하나는 형식적(formal) 또는 비교상의(comparative) 정의의 개념인데, ‘유사한 것은 유사하게 대우한다(treating similar cases similarly)’는 아리스토델레스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정의의 개념이다. 이 개념에 임각해서 어떤 상황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분어진 대우들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일을 수행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 의해 두 배의 월급을 준다고 하면, 이러한 대우는 形式的 正義의 개념에 의하면 공정치 못한 것이다.

이 형식적 정의는 나문히 平等指向的 傾向을 보이는 정의이다. 분배의 문제와 결부해서 볼 때, 평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經濟的 權利(claim)를 가진다는 전제에 의거한 분배정의의 原則이다. 이 원칙의 밑에 깔린 인간관은 무소의 인간관, 즉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동등하다는 인간관이다. 이 인간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同一한 價值를 지녔으며 따라서 사회에 대해 똑 같은 權利를 가졌다. 그렇다고 실제로 모든 인간이 똑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동등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때는 관계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差別待遇에 대한 正當化가 있어야 한다.

오랜 전통을 가진 또 하나의 정의의 개념은 실체적(substantive) 또는 非比較上의(noncomparative) 정의의 개념인데, ‘각자에게 그의 징당한 물을 주거나 또는 각자에게 그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을 준다(giving to each his due or what he has a right to)’로 요약되는 원칙에 의거한 정의의 개념이다. 이 正義의 概念에 의거해서 어떤 상황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받은 대우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대우에 대해서 각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요구할 권리가 충족되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權利를 바난 당했나든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단당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대우받았든 관계없이 그러한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形式的 正義의 개념에서는 권리의 종족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比較가 중요하다.

이 實體的 正義에 입각한 정의관에서는 정의를 권리행사와 결부짓는다. 이런 의미에서 실체적 정의는 다분히 자유지향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自由指向的 正義觀의 기초는 차등화(differentiation)의 원칙이다. 즉, 분배의 문제에 관해서 이 원칙은 사람들이 상이한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 分配正義의 원칙이다. 즉, 사람은 각각 다른 자격을 가지며, 따라서 사회에 대한 권리도 달라짐을 전제한다. 이러한 원칙의 뒤에 깔린 人間觀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동등하지는 않다는 고대 그리스 철인들의 인간관에 유래한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지는 않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동등하지 않다고 간주함을 의미한다. 즉 거중의 책임이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는 그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同等하다고 보고 이를 분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에는 우선 농 같은 나누어 주고 사람이 다름에 따라 사후 재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人間은 기본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분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에는 우선 다르게 나누어 주고 나서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調整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경우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형식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이 두 가지 정의의 개념의 모두 나름대로 고유의 合理的 論理를 가지면서 또한 동시에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보다 더 완전한 정의란 이 두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정의의 개념들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實體的 正義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의하면, 모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준 이상 그들의 몫을 타인의 몫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즉 形式的 概念으로서의 정의가 필요 없어진다. 각자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었는데도 타인과 비교후 불평한다만 이것은 질투나 기타 불건전한 감정 탓이다. 한편, 形式的 正義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의하면, 각자의 정당한 몫이란 사실상 타인의 몫에 상대적이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후 자기의 정당한 몫을 알게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몫을 준답시고 어떤 누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이 주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요구할 權利가 있는 것까지 주지 못할 수가 있다.

결국 이 두 개념의 정의는 상호 補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등하게 대우하더라도 基本權利를 침해하는 것은 완전한 정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정당한 몫을 준디고 하더니도 현지한 차별대우 역시 완전한 정의가 되기 어렵다. 요컨데, 이

두 개념의 정의는 완전한 正義의 한 構成部分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최근, 정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한 가지 두드러진 새로운 현상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도 합리적 계산과 科學的 接近方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점차 강하게 대두되면서 正義의 문제도 합리적 선택이론의 일환으로 다루려는 경향이다[Ericsson(1976, pp. 64~105)]. 예컨데, 정의의 문제를 공공선택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이론에 의하면, 道德的 價値는 결국 적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 각 개인의 의사 및 선호의 합수인 만큼 정의 역시 사회구성원 각 개인의 정의관이 취합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분배상태 x , y , z 가 있을 때 이 세 대안들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개인들의 意思나 選好를 수렴하여 순위를 매긴 결과 x 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x 라는 상태가 가장 정의로운 分配狀態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正義의 문제는 각 개인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사회 전체의 의사로 수렴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문제로 낙착된다.

결국 정의, 특히 분배에 있어서의 정의가 요구되는 상황은 개인들간 또는 集團들간의 利害가 상충되어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의란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 유념하면서 브라이언 배리(Brian Barry)는 정의의 개념을 상호이익(mutual advantage)으로서의 정의와 不偏不黨(impartiality)으로서의 정의, 이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Barry(1989, p. 8)]. 相互利益으로서의 정의의 개념에 의하면, 모든 이해당사자들 각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면서 갈등을 푸는 것이 곧 정의의 요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相互利益으로서의 정의를 구현하는 해결방안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즈음 경제학의 중요한 分析道具가 되고 있는 게임이론을 통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한편, 不偏不黨으로서의 정의의 개념에 의하면, 말 그대로 불편부당하고 公平無私한 것이 곧 정의이다. 이 개념은 사리사욕을 초월하여 공인된 어떤 原則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정의의 要諦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의 개념은 칸트가 정형화한 이래 오늘날 롤즈(J. Rawls)의 『正義論』에 이르기까지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롤즈에 의하면, 사회구성원 각자가 불편부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전이 잘 조성된 狀況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은 社會的 合意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련의 정의에 관한 原則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출된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이 과연 어떠한 過程을 거쳐서 도출되었느냐이다. 이 원칙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었으면 정의로운 원칙이고 그렇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한 원칙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한 과정이란 롤즈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 (original situation), 즉 모든 利害關係者들이 불편부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황에서 自發的 合意에 도달하는 과정을 가르킨다. 그러므로 이런 롤즈의 논리에 따르면, 예컨대 어떤 분배의 상태가 정의로운가 아닌가는 진적으로 그 분배가 공정한 過程을 거쳤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흔히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는 관행은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진 결과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결과가 보장되기 때문이 아니라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하는 과정이 불편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의를 節次的 正義(procedural justice)라고 부른다[Rawls(1971, p. 86)]. 롤즈가 말하는 정의는 절차적 정의이다.

正義의 원칙이란 형식적 정의이든 또는 실체적 정의이든(또는 다르게 정의된 정의이든)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이른다. 가장 흔하게 품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Meyers(1985, pp. 1~5)].

- ① 각자에게 그의 德(virtue)에 따라
- ② 각자에게 그의 노력에 따라
- ③ 각자에게 그의 기여(또는 공적)에 따라
- ④ 각자에게 타인과 합의한 바에 따라
- ⑤ 각자에게 그의 필요(needs)에 따라
- ⑥ 각자에게 사회적 관행에 따라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서 德의 원칙은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性品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훌륭한 원칙임에는 틀림없지만, 데울 재는 구체적인 것대가 마땅치 않아 實現性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다. 노력의 원칙 역시 인간의 바람직한 성품인 선의의 의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원칙임에 틀림없지만, 노력의 결과도 중요하다는 점이 무시되고 있어 문제이다. 寄與의 原則 또는 공적의 원칙은 社會的 責任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원칙이며 노력의 의도가 좋다면 그 결과도 좋아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合意의 原則은 공정한 게임을 강조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合意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합의의 원칙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여기에서의 합의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로 보아 합의의 원칙은 기여의 원칙을 具體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必要의 原則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동등한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사회적 관행의 원칙은 확립된 社會的 慣行에 바탕을 둔 각 개인의 기대가 좌절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원칙들 중에서 德의 원칙, 努力의 원칙, 그리고 寄與의 원칙은 더군다나 實體的 正義의 개념에 충실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덕이라든가, 노력하는 정도, 또는 능력이 다르기 마련인데, 따라서 이 원칙들은 어떤 신대된 주체에 시의 個人的 差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유지향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편의의 원칙이나 사회적 관행의 원칙은 어떤 기본적이고 중요한 측면에서 사람들 사이의類似性을 강조하는 원칙이다. 기본적 욕구에 있어서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이 보통이고, 또 대체로 보면 사회적 관습은 普遍性에 기반을 두며, 개인의 나원성이나 우월성은 예외로 치급한다. 그런 의미에서 편의의 원칙이나 사회적 관행의 원칙은 平等指向的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의 원칙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은 앞에서 언급한 풀즈의 정의의 원칙이다. 정의와 관련해서 그가 문제삼은 것은 요컨대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基本的 社會構造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인데, 그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不偏不黨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학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첫번째 정의의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자격으로 치대한 많은 基本的 自由를 최대한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자유권의 分配를 결정하는 원칙으로서 각 개인의 자유재한은 오직 자유를 위해서만 가능하지 다른 어민 것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음을 전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두번째 정의의 원칙은 소득이나 권력 등 자유 이외의 것의 분배를 결정하는 원칙으로서 다시 差等의 原則과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기대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회에서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機會均等의 원칙이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 적체이나 적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히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황경식(1885, pp. 359~365)].

2. 主流經濟學의 分配的 正義觀

2.1. 寄與의 原則

대체로 보면, 價値中立性을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은, 분배의 형평문제는 경제학이 나누기 거북한 문제라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1950년대 이후 주류경제학은 분배의 衡平問題는

외연한 채 效率의 문제에만 집중해 왔다고 더로우교수는 비판한다[Thurow(1975, p. 20)].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은, 效率의 問題는 가치판단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으되, 分配의 衡平問題는 결국 국민생산 중에서 누가 얼마 만큼 더 차지하고 또 누가 얼마 만큼 덜 차지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윤리적인 문제요 價值判斷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범위를 떠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분배의 형평문제에 대한 각 개인의 견해는 결국 각 개인의 偏見에 불과하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主流經濟學은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짐은 신봉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학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所得이나 富의 분배는 거의 전적으로 市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류경제학이 시장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이를 통해서 결정되는 소득이나 부의 분배에 대하여는 價值中立이란 미명 아래 분명한 가치판단을 유보한 채 함구한다는 것은, 더로우교수의 말대로, 市場을 통한 소득이나 부의 分配를 정당한 것으로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다[Thurow(1975, p. 22)]. 물론 하이에코나 프리드만교수와 같이 市場에서 결정되는 所得分配야말로 공정한 분배임을 공공연하게 역설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렇게 딱 부러지게 소득분배의 축면을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공정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류경제학이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分配的 正義의 원칙은 ‘각자에게 그가 또는 그가 소유한 생산수단이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¹⁾ 여기에서 말하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란 시장에서 결정된 생산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限界生產性을 의미한다.

주류경제학이 이 기여의 원칙, 生產性의 原則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제 일차적 원인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열심히 生產에 기여하려 하지도, 최선을 다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자원이 效率的으로 이용될 수가 없을 것이고, 생산이 極大化될 수도 없을 것이다. 각자에게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각자 適材適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하면, 국민경제 전체로서도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각자의 뜻이 더 키질 수 있을 것이다. 生產性에 따라 分配한다면,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1) Friedman(1962, p. 161) 프리드만교수의 표현으로는 “To each according to what he and the instruments he owns produces”

이 갈리면서 貧富隔差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류경제학 쪽에서는 이런 식의所得不平等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하게 축구하는 동기로,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처리야 할 대가로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이 經濟成長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뚜렷한 실증적 자료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Thurow(1975, p. 48)].

주류경제학은 다수의 참된 平等化를 위해서도 시장에서 결정된 생산성에 따른 分配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에 의하면, 시장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평준화이다. 예를 들면, 勞動의 자유스런 이동과 勞動市場을 통한 고용은 결과적으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의 임금을 평준화시킴으로써 임금격차를 해소시킨다. 따라서 그 만큼 근로소득의 平準化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國際貿易은 국제거래상품 가격의 평준화를 통해서 임금의 국제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임금소득의 國際的 平準化에 기여한다. 사실 소득의 불평등이 자유방임 시장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류경제학 학자들 중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평준화 기능에 비추어 보면, 所得의 不平等이 시장경제의 必然的인 현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市場經濟 하에서의 현저한 소득격차는 주로 기여의 원칙이 적용되기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非經濟的 要因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득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Riley(1989, pp. 128~153)]. 예를 들면, 獨占權으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또는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으로부터의 소득 등이 그 좋은 예이다.

2.2. 社會의 安定과 寄與의 原則

프리드만교수는, 시장에서 결정된 生產性에 따른 분배의 원칙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핵심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안정적일 수가 없다. 프리드만교수에 의하면, 생산성에 따른 分配의 원칙이 바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가치중의 하나이다. 대체로 시장경제체제에 의존하는 사회가 안정적인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원칙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만교수의 이러한 논지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구체화함으로써 市場을 통한 所得分配가 사회의 안정과 직결됨을 보이는 주장이 있다. 마치 사회지도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누가 사회지도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듯이 國民所得을 어떤 방법으로 분배하느냐에 따라 결국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가난뱅이가 되느냐가 결정될 터인데, 사회지도자 결정의 문제나 國民所得 分配의 결정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어느 사회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잘 풀어야 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회

직 문제는 政治的으로 解決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봉건사회나 고대사회에서는 국민소득의 분배문제는 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였고, 資本主義 사회에서는 주로 市場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든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분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民主主義 社會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란 주로 다수결에 의한 방법이다. 이 다수결의 방법으로는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분배방법이 없음을 어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다[Usher(1981, pp. 12~15)]. 지금, 15명이 3천만 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다고 하자. 우선,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200만 원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치적으로 安定的인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다. 주류경제학이 가정하듯이 모든 사람이 利己的으로 행동한다면, 이 15명 중에서 몇몇이 짜고 다수결이라는 좋은 수단을 이용해서 그들의 독점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15명 중에서 8명이 團合을 하면, 그 3천만 원을 몽땅 자기들끼리만 각각 375만 원씩 나누어 먹게 하는 법안을 多數決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 새로운 방법은 200만 원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을 엎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 두번째 방법도 결코 政治的으로 安定的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소외된 7명이 짜고 8인방 중의 한 명만 꼬여내어 다수파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이 두번째 방법을 들려 엎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끌어내는 데 9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천 백만원을 각각 300만 원씩 나누어 가지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번째 방법 역시 政治的으로 안정적인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번째 분배방법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연합전선의 형성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합전선이 형성되더라도 이 연합전선을 깨뜨릴 수 있는 새로운 연합전선의 형성이 항상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安定的인 解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임이론에서 이미 증명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分配問題를 놓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회구성원들의 離合集散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와중에서 안정적 정권이 형성되지 못하며 따라서 社會도不安定해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칙 또는 이에 준하는 원칙으로 정치적 해결을 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所得分配의 問題는 정치권이 떠맡기에는 너무나 과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득분배의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일임하고 단지 정부는 所得再分配 政策을 통해 사후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비록 정부가

사후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주류경제학 학자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수행하는 관료체제의 非能率性이나 부패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한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자들로부터 강수한 돈 중에서 정작 기난한 사람들에게는 30%도 도달하지 않고 나머지는 官僚組織을 통해서 채어나가 버리는, 그런 식의 非能率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있어서 고질적인 問題임을 주류경제학 학자들은 유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貧富隔差의 問題

그러면 이런 식의 분배관 내지는 分配의 正義觀을 가지는 주류경제학은 시장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貧富隔差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개인간의 빈부격차라든가 계층간의 빈부격차 그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主流經濟學은 별로 할 말이 없다. 주류경제학은 임금, 지대, 이자, 등 주로 機能別 소득의 分配問題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류경제학에서는 개인간 또는 계층간 빈부격차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능별 소득의 결정이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명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나 어떻든 주류경제학은 우선 세간에서 말하는 빈부격차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간다. 통계상으로 나타난 빈부격차는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統計上으로 관측되는 소득은 금전화된 이익만을 반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는 實質所得은 금전화된 이익뿐만 아니라 비금전화된 이익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면, 같은 교사라도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소위 벽지수당을 추가로 받는데, 그러면 순전히所得統計上으로만 본다면,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고소득자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 서울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벽지수당이라는 金錢的 利益 대신에 서울에 산다는 비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런 非金錢的 所得까지 고려한다면 서울에서 근무하나 벽지에서 근무하나 실질소득은 대체로 같아지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되는 수준에서 벽지수당의 액수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非金錢化된 利益이 크면 금전화된 이익이 적게 되도록 하고 또 비금전화된 이익이 적으면 금전화된 이익이 크게 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주류경제학은 統計上으로 관측되는 불평등의 많은 부분은 바로 금전화된 이익에 있어서의 불평등이라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은 많은 경우 개인이나 계층의 가난은 결국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選擇한結果라고 본다. 즉, 게으른 사람들은 일 대신에 여가를 즐기기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하며, 방탕한 사람은 저축 대신에 낭비를 즐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해진

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또, 사람에 따라 不確實性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면, 모험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매우 높은 所得을 얻거나 혹은 매우 낮은 소득을 얻는다. 반대로 모험을 싫어하고 安定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통의 소득을 누리게 된다. 市場은 이러한 다양한 취향을 최대한 충족시켜주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제수가 좋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가난해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모험에 대한 각자의 취향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所得隔差는 어떻든 각자 자기가 좋아서 選擇한 것이다.

이같이 개인의 自發的 選擇의 결과로 인한 빈곤의 문제는 정부로서도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 단지 균면과 저축을 장려함으로써 市場을 통해서 많은 보상을 받게 유도할 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빡 간이 열심히 일하며 또 끝없이 근검하게 생활하더라도 개인간 貧富隔差가 생길 여지는 많다. 사람에 따라 先天的 능력, 자질, 천부적으로 주어진 여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能力이 부족한 사람, 또는 척박한 토지에서 태어나 이를 경작하는 사람은 낮은 생산성을 감수해야 하며 따라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낮은 生產性으로 인한 빈곤의 대책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각종 기술교육 및 기술진보의 촉진을 위한政府의 각종 投資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체로 보면, 개인의 천부적 能力의 差異로 인한 소득불평등이나 개인의 노력에 의한 부의 축적으로 인한 불평등은 사회적 용인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相續으로 인한 不平等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부감이 매우 크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류경제학의 사고방식에 따른다면, 상속으로 인한 불평등만 문제시 삼을 이유가 없다. 엄밀히 말해서 상속으로 인한 불평등은 천부적 능력이나 자질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바 없기 때문이다. 자녀에 대한 教育投資의 형태로 상속하는 것이나 사업가로 훈련시켜주어 상속하는 것, 또는 그냥 재산으로 상속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근검절약으로 인한 富의 积蓄도 不平等을 초래하는데, 근검절약의 자질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所得不平等을 이유로 상속을 반대하는 것은 상속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프리드만교수는 강변한다[Friedman(1962, p. 166)].

설령 시장경계 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득불평등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결정된 생산성에 따른 분배는 소득계층간의 자유로운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不平等이 고착되지 않는다고 주류경제학은 주장한다. 시장경제체제의 사회에 있어서는

가난한 집 자식들도 능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부자집 자식들이라도 못나고 게으르면 어느새 거지신세가 된다. 오히려 市場經濟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사회계층의 固定化 傾向을 보인다고 프리드만교수는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주류경제학이 모든 貧富隔差를 이런 식으로 正當화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의 자유스런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는 소득, 非經濟的인 要因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득, 바로 이러한 종류의 소득이 현실적으로 관측되는 빈부격차의 큰 원인이며 따라서 이러한 소득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주류경제학이 문제시 삼는 所得不平等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득불평등이 애말로 각 개인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탓으로 초래되는 소득불평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市場經濟體制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각 개인으로 하여금 능력이나 부존자원을 效率的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 한 예가 우리 주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각종 獨占的 要因들이다. 독점적 요인들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가 돌아가게 한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獨占的 要因도 문제이지만, 특히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주류경제학자들이 자주 문제삼으면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독점적 요인은 정부의 각종 특혜와 인·허가로 인한 독점적 요인들이다.

이런 독점적 요인 이외에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요인은 인간의 自然的 不完全性이다. 아무리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不確實性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되며, 따라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소득의 不平等이나 貧困에 대하여 주류경제학이 흔히 제시하는 대책이란, 市場機能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자유경쟁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며, 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쓸데없는 市場介入으로 인한 독점적 요인들의 제거가 주류경제학자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사항이다. 요컨대, 주류경제학의 所得隔差 問題에 대한 대책은 첫째는 시장에서 불완전경쟁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市場에 적극 참여해서 시장을 통해서 많은 대가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2.4. 主流經濟學 分配觀 批判

물론 주류경제학이 소득의 분배는 ‘寄與의 原則에 따라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규범적 원칙을 명시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다’가 아닌 ‘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價值判斷에 관한 사항이라서 주류경제학과 같은 과학이 다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류경제학의 기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이 원칙의 正當性에 대한 옹호

가 아니라 더분히 機能主義의 說明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류경제학의 자세에 대해서는 주류경제학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價值中立을 그렇게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은 진정 價值判斷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엄밀히 말해서 주류경제학이 그 많은 가치 중에서 다른 것은 제쳐두고 굳이 經濟的 效率의 문제만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그 만큼 경제적 효율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價值判斷에 관한 사항이다. 물론 효율은 누구나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가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效率을 탐구한다는 것이 재론의 여지 없이 가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라 는 것이다[Thurow(1975, p.21)].

설령 효율을 탐구하는 것, 그 자체에 이의를 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최소의 노력으로 도둑질을 최대로 많이 하는 것도 效率의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그런 것을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를 꺼리기도 하겠지만 또한 그런 식의 效率이 도대체 무슨 意味를 가질 것이며 무슨 연구가치를 가질 것인가?

주류경제학은 市場이 效率을 달성하게 해준다고 주장하는데, 시장매커니즘을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예컨대, 만일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이 출발하지 않고 어떤 선수들은 출발점보다 앞에서 출발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출발한다면, 아무리 모든 선수들이 잘 뛰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기를 보고 공정한 경기, 최선을 다한 경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출발점에서의 狀況을 도의시한다든가 또는 폭언하고 경기의 과정과 결과만을 해설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것이다. 시장매커니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經濟的 效率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모든 분석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어서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效率은 道德的 價值判斷과 불가분하게 얹혀 있다.

주류경제학의 效率분석은 모든 사람들의 欲望을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전제로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의 所得 역시 주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전개된다. 어떤 사람이 담배나 술을 좋아하고 원하면, 주류경제학은 그 사람이 왜 담배나 술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으며, 또한 그가 담배와 술을 좋아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전혀 불문에 붙인다. 옆집 사람들은 끓어 죽든 말든 개의치 않고 자신의 미용을 위해서 아침저녁 우유로 목욕하는 부자집 마나님의 욕망에 대해서도 주류경제학은 그 이유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市場에서 정해진 價格을 지불하는 한 주류경제학은 이들의 욕망을 최대한 충

즉시켜주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니 效用의 理論이 정립되던 19세기 초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새로운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으며, 그동안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을 조작하는 기술이 날로 향상되어가고 있음이 현실이다. 부도덕한 목적을 위해서 조작된 욕망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충족시킨다는 것이 무슨 意味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의 經濟的 效率은 각 재화의 가격이란 신호 아래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가격은 사람들의 所得分配 樣態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 각 재화에 대한 需要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 개인의 재화에 대한 선호가 이 재화에 대한 각 개인의 需要曲線으로 표출되며, 이 각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친 것이 시장수요곡선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는 각 개인의 재화에 대한 욕망이 각자의 所得水準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수요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예를 들어서,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하지만, 가난뱅이의 자동차에 대한 욕망은 市場에서 수요로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반면 부자의 욕망은 한껏 반영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牛必品에 대한 그들의 절실한 욕망마저도 제대로 시장에 전달할 금전적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부자들은 그들이 하찮은 욕망조차도 시장에서 관찰시킬 수 있는 金錢的 能力を 가진다. 그러므로 만일 애초에 소득이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각 개인들의 欲望 역시 不公平하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니, 시장이 공정하나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요가 소득분배 양태에 따라 달라지니 市場에서 결정되는 價格 역시 소득분배 양태에 相對的일 수밖에 없다. 먼저 한 빈부격차 없이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각종 재화들의 가격과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각종 재화들의 價格은 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인당 6천 달러, 가구당 21만 4천 달러라고 하면, 우리 것으로 가구당 한 달 平均所得이 약 150만 원이 된다는 밀인데 만일 대한민국에 貧富隔差가 거의 없어서 모든 가구가 고르게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고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에는 골프장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테니 골프장도 없을 것이며, 자가용 자동차 굳이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테니 자동차도 별로 많이 생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만일 애초의 所得分配 樣態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에 상응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각종 재화의 가격은 올바른 價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온마로자 못한 가격의 신호에 따라 결정된 자원이용은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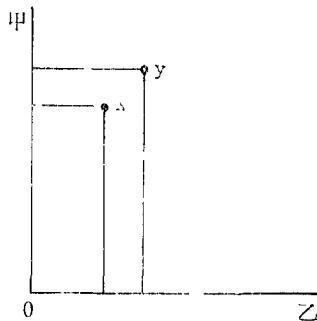
우유상재학에 의하면, 시장에서 소득은 헉개생산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限界生產價值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수요구조는 소득분배 양태에 달려 있다. 그리니 결국 시장에서 한계생산에 의한 所得分配는 당초의 소득분배 양태의 함수이다. 만일 당초의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면, 시장에서 한계생산 역시 불공평하게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 역시不公平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초의 소득분배 양태가 공정하지 못하면, 시장은 공정하게 소득을 분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시장의 平準化 機能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주류경제학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평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에 관한 평등인가, 다시 말해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대상의 종류들을 어떤 것들로 할 것인가이다.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平等의 對象은 정치적 평등, 법적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등이다. 프리드만이나 노직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평등대상의 범위를 재산권이나 특정 정치적 권리 및 시민권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平等主義者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밝스는 그러한 좁은 평등대상의 범위만으로는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가 없나고 주장한다. 그래서 밝스를 비롯한 進步主義者들은 평등의 범위를 훨씬 더 넓힐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이 요구되는 범위와는 별도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평등하게 분배될 대상이 충분히 있느냐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총 100개의 사과를 甲이 50개 정부가 50개 가지고 있고 丙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甲과 乙 모두 사회가 보유한 사과를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하면, 결국 사과 100개에 대해서 평등이 요구되는 셈이다. 그래서 平等要求範圍은 사과 100개이다. 그러나 乙의 사과를 몰수하지 않는 이상 평등에 대한 요구에 응해서 정부가 나누어줄 수 있는 범위, 즉 平等實現範圍은 사과 50개에 불과하다.

평등실현범위 안에서 추구되는 평등을 限界的 平等(marginal equality)이라고 한다[Rae (1981, pp. 48~55)]. 위의 사과의 예에서 정부가 보유한 사과 50개를 甲과 乙에게 각각 25개씩 똑같이 나누어주는 방법이 한계적 평등을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미 현저한 불평등이 존재할 경우 限界的 平等은 불평등을 교정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를 영속화 시킬 우려가 있다. 위의 사과의 예에서 한계적 평등의 추구는 결국 甲이 25개, 乙이 75개를 가지는 불평등을 낳는다. <그림 1>에서 종축은 甲의 뜲의 크기를, 횡축은 乙의 뜻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하면, 점 x 는 甲이 乙보다 현저하게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있는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상황에서 甲과 乙에게 동일한 소득을 추가시키는 것은 예를 들면 y 라는 상황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이런 限界的 平等의 추구는 이미 존재하는 심한 不平



〈그림 1〉 限界的 平等

等을 계속시킬 뿐이다. 시장이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거래란 상호이익을 위한 것이다. 시장이 自由競爭市場이라면, 상호이익의 증진이 보장되겠지만, 시장에서의 상호이익의 보장은 잘 해야 〈그림 1〉에서처럼 x로부터 y로 옮겨가는 정도일 것이다.

이런 限界的平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등실현법위를 확대해야 한다. 예컨데, 정부는 乙이 가진 사과 50개를 몰수하면, 平等實現範圍은 사과 100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100개의 사과를 甲과 乙에게 똑같이 50개씩 나누어줌으로써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정부는 再分配를 통해서 기존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셈이다. 하지만 평등실현법위의 확대과정이 불평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대신 정부가 가진 사과 50개를 甲에게 주는 방법도 택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에게 공여되는 사과 50개는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 결과적으로는 평등이 달성되지만, 분명히 분배과정에서는 甲에게 50개, 乙에게 0개 주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요컨데,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통해서 평등을 달성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평등추구에 대해서는 평등의 이름을 쓴 불평등이라는 비난이 가해진다. 그러나 재분배를 통하든 보상을 통하든 평등요구법위에서 평등이 달성되는데, 이러한 평등을 합계적 평등과 구분하여 總體的平等(global equality)이라고 한다. 사과를 甲이 50개, 乙이 50개 가진 상태는 평등이 요구되는 사과 100개에 대해서 甲과 乙이 평등한 상태이므로 총체적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불평등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 합계적 평등과 총체적 평등은 상충된다. 限界的平等의 달성을 총체적 평등을 증진시키기는 커녕 영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총체적 평등의 추구는 합계적 평등을 배제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한편에서는 市場機構가 불평등을 조장하고 정부가 관장하는 평등실현법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합계적 평등과 총체적 평등 사이의 갈등은 심화된다.

주류경제학 所得分配論의 근간을 이루는 합계생산이론과 소득의 완전배분이론은 사실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맑스의 노동착취설에 대한 반동으로 개발되었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Landreth(1976, p. 252)]. 주류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는 新古典學派經濟學의 창시자들은 맑스이론에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윈스티드(P.H. Wicksteed)과 린 바베르크는 맑스이론에 대한 장문의 비판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클락(J.B. Clark) 역시 한계효용이론과 한계생산이론을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득분배의 限界生產理論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자본주의체제 아래에서 결정되는 所得分配現象을 正當化하는 이론적 근거로 삼았으며, 또한 이를 열심히 설득하고 다녔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한계생산이론으로부터 시장경제체제가 낳은 계층간의 소득분배상태가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限界生產理論이 증명한 것은 잘 해봐야 각 개체로서의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社會的 正當性 정도이지 주체로서의 각 개인에 귀속되는 소득의 사회적 정당성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대가 토지라는 객체에 귀속되는 정당한 대가라고 해서 반드시 이 지대가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도 정당한 대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첨언할 것은, 주류경제학은 所得이 어떻게 분배되는가만 설명하고 있지 재산이나 富의 分配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하다. 예를 들어 1989년 『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 研究報告書』는 우리나라의 토지소유의 편재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들중 토지를 많이 가진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구의 약 72%가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그리고 자본을 합친 富의 분배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富의 不平等이 근로소득의 불평등에 비해서 훨씬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李廷雨(1991, pp. 327~365)].

3. 맑스經濟學의 分配의 正義觀

3.1. 勞動寄與의 原則과 必要의 原則

언뜻 보면 맑스의 資本主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어디까지나 그 나름대로의 색다른 정의관에 의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맑스는 資本主義 社會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임을 강하게 암시는 했을 당시 노골적으로 이를 표현하기를 삼가했다. 맑스가 자본주의 사

회를 포함해시 계급분화된 모든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까닭은 이런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인권이 유린되어서도 아니다. 맑스가 階級分化된 사회를 비판한 이유는 그런 사회들이 정의의 개념과 권리의 개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원천적 缺陷을 가진 사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그토록 주창한 공산주의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하기를 꺼려했다.

맑스 자신을 비롯해서 엥겔스나 레닌, 그 어느 누구도 체계적인 正義論의 제시하지는 않았다[설현영(1990, p. 62)]. 체계적인 정의론은 고사하고 정의니 권리니 하는 일체의 법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들을 이데올로기적 네센스로 시내착오적 말의 쓰래기에 불과하다고 매도하였다[황경식(1990, p. 84)]. 이러한 매도는 단순한 구호성 매도가 아니라 맑스의 응대한 사상체계에 뿌리를 둔 의미심장하고 일관성 있는 매도임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나 엥겔스는 無產階層의 정의감이나 도덕률에 호소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선동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의감이나 도덕률에 호소해서 革命을 선동했던 푸루동이나 다칼레 등 당시의 다른 사회주의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이같이 맑스가 正義感이나 도덕률에 호소하지 않은 대는 깊은 뜻이 담겨 있지만, 표면상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투쟁의 목적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며 두쟁전선에 있어서 내부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의라는 개념의 성격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仁人仁色이어서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正義의 原則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맑스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합의 불가능한 것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투쟁하다가는 내부분열을 일으키기 딱 알맞다고 본적하다.

그렇다고 맑스가 전혀 정의관도 없고 正義의 原則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정의에 대한 맑스의 산발적인 견해들로부터 일관성 있는 정의론을 끌어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맑스의 正義觀은 平等指向的 정의관으로 평가되고 있다[Elster(1985, p. 230), 설현영(1990, p. 62)]. 이러한 정의관에 입각해서 맑스는 차원을 달리하는 두 가지 分配的 正義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래서 맑스의 정의론을 位階的 正義論(hierarchical theory of justi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Elster(1985, p. 230)]. 그가 제시하는 첫번째 분배적 정의의 원칙은 공산주의 초기단계, 달리 말해서 社會主義 段階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걸고 각자의 생산에 따라 分配’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내용상 기여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는 각자의 勞動을 통해서 생산한 것 중에서 일정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분배받는다. 공제내역에는 ① 생산수단의 소모분 보충(감가상자), ② 생산확장을 위한 재원 마련, ③ 불의의 사고나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및 보험금, ④ 생산과 직접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 ⑤ 교육, 보건 등 사회복지를 위한 경비, ⑥ 어린이, 노약자, 불구자등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구호를 위한 기금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공제하고 나면, 각자는 사회에 기여한 만큼 되돌려 받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社會에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分配받게 될 것이다. 비록 각자는 공제된 부분만큼 되돌려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제된 부분이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전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쓰일 共同管理 기금이 되며, 노동자 전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서 정수되고 쓰인다는 의미에서는 착취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勞動寄與의 原則은 자본가계급이 없어진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노동자로 대우하고 노동을 기준으로 분배함으로써 資本主義 社會에서의 계급특권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이하므로 비록 控除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기여에 따른 분배는 필연적으로 사람에 따른 현저한所得隔差를 허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기여의 원칙은 노동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인정해주는 셈이며, 형식적 평등의 미명 아래 實質的 不平等을 조장하는 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맑스는 노동기여의 원칙이 가져올 形式的 平等을 극복하고 실질적 평등을 가져다 줄 공산주의 고도화단계에서의 원칙으로서 ‘能力에 따라 걷고 必要에 따라 分配’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 必要에 따른 분배의 원칙은 현실적으로 보다 매우 비현실적인 원칙이어서, 맑스가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였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마저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원칙이다[설현영(1990, p.69)].

결국 分配의 正義의 원칙은 희소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충된 요구들을 판결하기 위한 궁극의 規範的 原則이며, 한정된 재화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어야 할 원칙이다. 稀少性은 인간의 욕망과 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 사이의 괴리, 달리 말하면, 需要와 供給 사이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필요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요컨대 각자의 필요를 근거로 한 요구들과 권리들을 모두 다 들어준다는 것인데, 희소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이는 現實的 으로 不可能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稀少性이 존재할 때는 필요에 따른 분배의 원칙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가족 사이 또는 친한 친구 사이에서 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3. 2. 稀少性과 分配의 正義

사회의 체제에 따라 必要의 原則이 적용될 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선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필요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를 가장 적게 가진 사회요 자본주의가 高度

化할수록 희소성의 정도가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짐으로써 필요의 원칙이 점점 더 적용되기 어려워지는 사회일 가능성을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맥스는 자본주의가 과거 전대미문의 높은 생산력을 일구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고도화단계에서는 생산의 無政府性으로 인한 내부모순 때문에 생산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의 주기적 不況은 많은 노동력과 자원을 사장시킨다. 자본주의가 고도화할수록 감독 노동이 라든가 체제유지라든가 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막대한 노동력이 非生產的 活動에 쓰인다. 자본주의 생산의 이윤추구 동기는 쓸데없는 것의 생산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시키고 있다. 資本主義 사회에서는 물자가 풍부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로부터 가난이 추방된 것도 아니다.

이같이 생산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는 需要의 側面에서도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인간을 매우 탐욕적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물욕과 所有慾을 끊임없이 조장함으로서 쓸데없는 수요를 한없이 부풀린다. 이윤추구의 노예가 된 資本家는 끊임없이 많이 생산하고 팔아먹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의 수나 각종 교묘한 상술로 소비자의 物慾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또한 저급한 欲望을 자극한다.

맥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물욕, 탐욕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요인을 상품물신 숭배 (fetishism)로 설명하였다. 商品物神崇拜는 상품 자체가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상관없이 獨自的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각하게 만든다. 예컨대, 각종 호화 가구들이 비싼 이유는 엄청난 빈부격차 그리고 남에게 뽐내고 싶은 허영심 탓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비싼 값이 호화가구 자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물리적 속성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고 호화가구를 욕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자본가들은 자본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生產力を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산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끊임없이 資本蓄積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각종 법적 권리의 체제 또한 인간의 물욕, 탐욕을 부축이고 영속화시키는 데 큰 功을 한다. 예컨대, 맥스는 私有財產權을 ‘소유물을 즐길 권리요, 다른 사람들에 개의치 않고 그리고 사회와 관계없이 소유물을 제멋대로 쳐분할 권리이며, 이기적일 권리 (right of selfishness)’라고 보았다 [Marx (1843, p. 53)]. 사유재산권 제도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기며 만들면서 혼자서 가지고 있어야 참으로 즐길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넣으므로써 각 개인에게 물질에 대한 所有慾을 조장한다. 私有財產權 制度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간섭을 싫어하게 만들며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찮고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복지 따위에 신경을 쓸 필요성을 덜 느끼게 함으로써 각 개인을 더욱 이기적이게 하고 사회적紐帶로부터 이탈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 및 돈독한紐帶關係로부터의 즐거움을 느낄 기회와 멀어지면서 더욱 더 물질로부터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계화되고 分業化된 生產方法은 노동을 즐거움의 원천이 아니라 임금이란 대가를 받아야 할 만큼 고통의 원천으로 만든다. 이 점도 사람들로 하여금 物質的欲望을 더욱 더 많이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전대미문의 높은 生產力を 자랑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아무리 생산력을 높힌다고 하더라도 資本主義를 구축하는 각종 社會體制 자체가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 값싼 욕망을 끊임없이 증대시켜서는 회소성의 문제, 부족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숙명일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맑스가 강조해 마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사회는 正義니 권리니 하는 法的인 概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과연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며,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인가?

3.3. 資本主義 社會의 正義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읽어낸 資本主義 社會의 正義, 특히 분배적 정의는 자유와 평등에 근거한 정의이며, 公平으로서의 정의이다. 즉,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맑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표면상으로는 정의로운 사회요 평등한 사회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다. 그 단적인 예가 勞動者와 資本家 사이의 관계이다. 표면상 노동자와 자본가는 동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고 勞動力을 거래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일자리를 얻지 않고는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노동자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生產手段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와 도저히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처지에 있지도 못하다. 사실상의 불평등이 비단 이런 노동자—자본가관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사실상의 不平等이 만연해 있다.

맑스는 인권에 관해서 개인의 권리(the rights of man)와 시민의 권리(the rights of citizen)를 구분했다[Marx(1843, p. 52)]. 개인의 권리란 법 앞의 平等權, 자유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을 가르키며, 시민의 권리란 주로 政治的決定에 참여할 權利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리들이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의 실질적 행사는 富와 사회적 身分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각

종 선거부정과 관료의 부정부폐가 이를 단적으로 반증한다. 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돈이 많을수록 인문매체를 통해서 더 많은 社會的影響力を 행사하게 되며, 선거부정과 뇌물을 통해서 더 많은 政治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現實的 不平等을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마치 고대사회가 노예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그릇된 생각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노예제도를 정당화했듯이 자본주의 사회는 法 앞의 平等과 자유보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정의로움을 과시하고 또 그럼으로써 사실상의 불평등과 부자유를 은폐한다. 그러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經濟的 不平等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의 실질적 행사에 있어서 不平等의 만연은 자본주의 자체가 표방하는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자본주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각종 사회악이 자본주의 사회에 속명적이라는 점은 인간의 理性에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이성이야말로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라고 갈파했던 헤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바이다. 헤겔은 자본주의라는 말 대신 市民社會라는 말을 썼는데, 그가 말하는 시민사회란 市場과 私有財產 제도에 기반을 둔,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관계, 산업의 급속한 팽창, 도시화의 빠른 진척 등을 특징으로 하는 봉건사회 이후의 市場經濟體制의 사회를 지칭한다. 헤겔은 주관적 자유를 선장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를 높이 평가하였지만 동시에 市民社會의 각종 社會惡은 주관적 자유의 무절제한 행사를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主觀的 自由란 사회적 규법이나 전통적 가치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개관적 자유에 대립된 개념이다. 客觀的 自由란 제도적으로 객관화된 원칙과 가치에 따라 행동할 때에 누리게 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헤겔은 시민사회의 사회악은 적절히 통제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근절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중립적인 엘리트관료에 의해서 주관적 자유의 무절제한 행사를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사회의 사회악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것을 기대하였다.

맑스는 시민사회에 있어서 社會惡의 必然性에 대해서는 헤겔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시민사회의 사회악은 불편부당한 엘리트관료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았다. 헤겔이 말하는 특징을 가진 시민사회의 사회악은 오직 그런 市民社會가 없어짐으로써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맑스는 주장하였다. 그는 정의에 대하여도 똑같은 논리를 했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정의를 외치고 權利保障을 주장해야 할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악은 정의니 권리니 하는 법적인 개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오직 정의와 권리를 필요로 하는 狀況을 해소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길이다. 正義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정의에 대한 수요는 도저히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 맑스의 기본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이루려는 努力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의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요 한 발짝 다가가면 한 발짝 더 멀리 달아나는 허황한 꿈과 같은 것이다. 결국 正義란 둘 이상의 이해당사자들 또는 둘 이상의 원칙들이 상충될 때 이들 사이의 올바른 均衡을 찾는 것이요, 따라서 상호간 한 발짝씩 물러서게 제한함을 기본으로 해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갈등을 주는 것에 불과할 뿐 이해관계가 충돌될 소지를 根源的으로 解消하는 것이 아니다.

3. 3. 共產主義와 正義

이러한 맑스의 논리에 의하면, 共產主義 社會는 정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사라져서 정의의 개념이 사회구성의 원리가 되지 않는 사회이다. 공산주의는 계획을 통해서 생산력의 낭비, 비생산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높은 生產力を 구가하는 사회이다. 공산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기심 대신 協助心과 共同體意識을 고취시킴으로써 재물의 소유욕을 갖지 않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한편, 사람들과의 어울림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탐욕 대신 건전한 욕망을 가지게 한다.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供給의 측면과 需要의 측면 모두에 걸쳐 稀少性의 문제와 갈등의 소지를 상당한 정도로 해소하고 있어서 分配의 正義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정의를 넘어선 사회라는 것이다[황경식(1990, pp. 84~85)]. 따라서 그러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했던 필요에 따른 分配의 原則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공산주의 초기 단계에 적용되는 勞動 寄與의 原則은 희소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쳐방적 원칙임에 반해 공산주의 고도화 단계에 적용되는 필요의 원칙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쳐방적 원칙이 아니라 고도의 生產力과 사회적 화합이 잘 이루어진 사회를 단순히 ‘서술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分配의 正義의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Buchanan(1982, pp. 23~24)].

그러면 그러한 분배적 정의가 필요없는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맑스는 여러 가지 점에서 헤겔과 정반대의 見解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맑스의 이론은 헤겔의 이론을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도 한다. 헤겔이나 『正義論』으로 유명한 롤즈와 같은 학

자들은 주로 法的인 概念을 중심으로 사회를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에 의하면 어떤 사회를 이해하고 또 이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짓는 핵심은 그 사회의 정의와 권리의 개념들을 理論的으로 규명하고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그 사회의 제도나 관행에 어떻게 具體化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법적인 개념들은 사회변화를 규명함에 있어서도 핵심적 열매가 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正義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좌절과 인권의 유린이 社會改革이나 혁명의 주된 동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스는 이러한 생각을 단호하게 배격하였다. 그는 法的 概念들이 사회를 설명하거나 사회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의 법적, 정치적 上部構造는 어디까지나 그 사회의 生產力 및 生產樣式에 대응해서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력 및 생산양식이 사회를 설명하는 核心的 변수가 된다. 모든 사회에 있어서 所得分配 樣態는 생산과정에 부수되는 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계급분화된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근본문제는 소득분배상에 있지 않고 그 사회의 生產樣式, 生產過程上에 있다. 따라서 어떤 사회의 근본적인 결함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생산양식, 생산과정을 파헤치는 것이 첨경이다. 맥스에 의하면, 資本主義의 근본적인 결함은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와 노동력밖에 갖지 못한 노동자로 계급분화된 생산양식에 있다. 어떤 사회가 分配的 正義를 세울 필요를 갈구한다는 그 자체가 그 사회의 애을 이루는 生產過程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이다. 자본주의에 비한 共產主義의 優越性은 공산주의가 올바른 分配的 正義를 잘 실천함으로써 분배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생산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분배 각 정의의 원칙을 아예 필요없게 만든 테 있다[Buchanan(1982, p. 59)].

4. 맷 는 말

많은 사람들이 혼히 맥스가 제기한 必要의 原則을 비현실적인 원칙으로 일소에 부치기 일수이다. 그러나 시실은 바스의 필요의 원칙이야 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친근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민경제가 생산한 생산물은 2단계에 걸쳐 분배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제 1 단계에서는 市場을 통해서 분배되며, 제 2 단계에서는 각 가정에서 다시 각 가족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富與의 원칙에 따라 분배된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는 대체로 각 가족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이 상례이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용돈이나 어떤 물건을 나누어 줄 때는 필요가 큰 아이에게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딜 주게 됨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제 1 단계에 있어서의 분배는 寄與의 原則, 생산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제 2 단계에 있어서는 必要의 原則에 따라 분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가정에도 能率의 原理가 도입되면서 가정에서의 분배에 있어서도 기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점차 커지는 것 같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所得分配에 있어서 필요의 원칙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寄與의 原則의 비중이 增大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가 사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경제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所得分配의 측면에도 잘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 880-5654
 팩서 : (02) 888-4454

參 考 文 獻

- 설현영 (1990) : “分配正義와 맘스주의”, 『哲學』 33.
- 李廷雨 (1991) : “韓國의 富, 資本利得과 所得不平等”, 『經濟論集』 30. 3.
- 황경식 (1990) : “맘스의 分配的 正義觀 是非”, 『哲學』 33.
- Barry, B. (1989) : *Theories of Justi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uchanan, A.E. (1982) : *Marx and Justice*, Totowa, Rowman & Allanheld.
- Elster J. (1985) : *Making Sense of Marx*,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Ericsson, L.O. (1976) : *Justice in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 Friedman, M. (1962) :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rwith, A. (1985) : “Economic Justice: Concepts and Criteria,” in Kipnis and Meyers(ed.) *Economic Justice*, Totowa, Rowman & Allanheld.
- Landreth, H. (1976) : *History of Economic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Co.
- Marx, K. (1843) : “On the Jewish Question,” in R.C. Tucker(ed.), *The Marx-Engels Reader* New York, W.W. Norton & Co.

- Meyers, D.T. (1985): "Reason, Unreason, and Economic Justice," in Kipnis and Meyers (ed.), *Economic Justice*, Totowa, Rowman & Allanheld.
- Rae, D. (1981): *Equalit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iley, J. (1989): "Justice under Capitalism," in J.W. Chapman and J.R. Pennock (ed.), *Markets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Thurow, L.C. (1975): *Generating In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Inc.
- Usher, D. (1981): *The Economic Prerequisite to Democracy*, Oxford, Basil Blackwell Publisher.